

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14.7.29>

대담·토론회 참석확인서

1. 선거명(선거구명)
2. 개최일시
3. 대담·토론회 참석자

가. 참석자별 : (후보자)·(대담·토론자)

나. 성명

다. 생년월일(성별)

위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○○선거에서 「공직선거법」 제82조의2에 따라 개최하는 대담·토론회에 참석할 것을 확인합니다.

년 일 일

(후보자)·(대답·토론자) ○○○ (인)

○○당 대표자 ○○○

직인

○○○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귀중

- 주 1.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"선거구명"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.
2. "대담·토론자"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·도의원선거에서 정당의 대표자가 후보자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참석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.